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02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김영배 · 최혁진 · 전용기
문정복 · 고민정 · 민병덕
황정아 · 박균택 · 서삼석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이용이 불가하여 현행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지자체에서 운행중인 특수교통수단의 경우, 운전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등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

접 구매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 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전체 보유택시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의 운영 비율, 제4항에 따른 구매비용의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전체 보유택시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u><신설></u>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신설></u>	⑤ 제3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의 운영 비율, 제4항에 따른 구매비용의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